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포함 〉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2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조기재취업 수당 포함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9일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Ⅲ. 검토의견

1.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조기재취업 수당 포함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규정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u>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u>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 ----. <u><단서 삭제></u>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u>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u> ,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69조의9(준용) ① -----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 ----- ----- ----- ----- -----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② -----취업촉진 수당에----- -----. ----- ----- -----.

나. 검토의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음(현행법 제37조제1항, 제2항). 한편 구직급여는 일정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고(제51조 내지 제53조), 현행법은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음(제54조, 제55조).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

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를 정하는 제4절에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르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함(제69조의2).

이에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제37조에 정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현행법이 영세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도 일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는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당연 취득하나(「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가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즉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므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때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영업자는 폐업의 시기 역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더욱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자영업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폐업 전에 전직 내지 재창업을 충분히 모색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시기와 폐업 시기를 스스로 조절하여 실업급여제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모든 종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은 자영업자에 대하여만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에서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제도 정비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다른 피보험자 유형과 달리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자발

적으로 폐업하고 곧바로 창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또한 자영업자는 폐업 전에 전직·업종전환 등을 모색할 기회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많으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